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01

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2월 5일 최기찬 의원외 14명

2.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3. 상정일자 :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2월 2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최기찬 의원)

1. 제안이유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의 주요기능이 시설 설립초기에는 각각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상호 교류 활성 화 등의 역할과 여성의 창업지원이라는 역할에서 최근에 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과 양육자의 돌봄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이라는 역할로 크게 변화되어 조례에도 현실에 맞게 기능과 용어를 수정·반영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 '스페이스살림'이라는 명칭에는 여성창업가를 '살리'는 창업지원시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 변화된 시 설의 성격에 맞게 양육자와 아이를 위한 양육친화공간이 라는 의미를 갖는 '서울가족플라자'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 ㅇ '서울여성플라자'의 정의와 기능을 변경하여 규정함
- ㅇ '스페이스 살림'의 정의와 기능을 변경하여 규정함
- 조례에서 기존 사용하던 명칭인 '스페이스 살림'을 '서울가 족플라자'로 변경함
- 용어 통일을 위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던 '스페이스 살림'을 '서울가족 플라자'로 변경하는 부칙 신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양성평등기본법」
- 이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 입법예고 (2024.2.14.~2.18.) 결과 : 의견없음
- o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조례안의 개요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의 고유사무인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살림의 운영에 있어 역할과 기능이 변 경됨에 따라 사무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이를 통한 안정성의 확보와 사무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재규정을 하고자 제안되었음.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 현황>

| 구분 | 서울여성플라자 | | 스페이스살림 |
|----------|----------------------------|--|--|
| 위치 | 동작 | 구 여의대방로 54길 18(대방동) | 동작구 노량진로 10(대방동) |
| 규모 | 지상 5층, 지하 3층(연면적 22,520m²) | | 지상 2층, 지하 2층(연면적 14,710㎡) (경제정책실 분임관라공간(3,247㎡) 제외) |
| 건립 기간 | 1999.11. ~ 2002.6. | | 2017.12. ~ 2020.10. |
| | 대관 공간 | 국제회의장, 아트홀, 시청 각실, 아트컬리지 | 다목적홀, 교육장, 세미나실 |
| 주요 시설 | 사무 공간 | 여성가족재단 및 입주기 관·단체 사무실(디지털성 범죄안심지원센터, 여성긴 | 여성가족재단 및 입주기관 사무실 (거점2호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아 이발달지원센터, 서울시여성능력개 바일 등) |
| | 편의 시설 | 급전화 1366 등) 다목적라운지, 스포츠센터, 아기쉼터, 주차장 등 | 발원 등) 엄마아빠VIP존(3호·4호), 서울형 키즈 카페, 서울장난감도서관, 식당, 커피전 문점 등 |

2 주요사항 검토

□ 시설의 명칭 및 내용 변경 관련(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관련)

- 현행 조례 제4조는 서울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의 종
 류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안 제4조제1호에 따른 여성플라자와 안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스페이스 살림의 변경·조정된 기능과 역할을 반영하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관리위탁하고 있는 두 시설의 명칭을 각각 여성과 가족을 상징하는 여성플라자와 서울가족플라자로 정하여 공간에 대한 시민의 직관적 이해도를 제고하고, 시설간 조화와 연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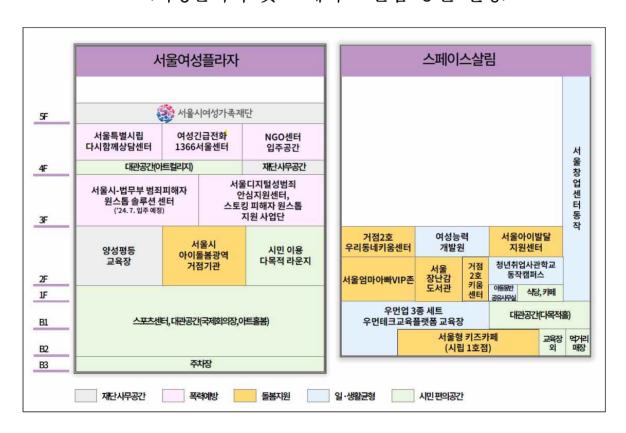
혅 햀 개 정 아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 • 운영 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여성플라자 : 여성의 직업능 1. ----- 양성평등 문화 력 개발, 상호 교류 활성화, 이 조성 및 확산, 폭력 예방 및 에 부수하는 공간 <u>지원</u> 등 여 피해지원, 여성의 직업 능력 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개발 -----목적으로 하는 시설 1의2. 스페이스 살림: 여성창업 1의2. 서울가족플라자 : 양육자 <u>의 돌봄 및 일·생활 균형 지</u> <u>활성화, 성평등 · 돌봄 환경 조</u>

<u>성 및 여성·가족 역량 강화</u> <u>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u> 2. ~ 7. (생 략) 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 7. (현행과 같음)

 시설 명칭과 관련하여 개정안을 각각 여성플라자와 가족플라자로 하거나, 서울여성플라자와 서울가족플라자로 보다 통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 공간 현황>



한편 위의 그림의 시설별 공간 현황과 같이 안 제4조제1호는 여성
 플라자를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여

성의 직업 능력 개발 등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목적하는 시설로, 안 제4조제1의2호는 서울가족플라자(현행 스페이스 살림)를 양육자의 돌봄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여성플라자에는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다시 함께상담센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사업단,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가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가족재단에서 양 성평등 정책 개발 및 여성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우먼업프 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다만 재단이 가진 고유의 기능1)인 교류 활성화와 이에 부수하는 공간지원 업무(대관업무)의 중요성도 검 토할 필요성이 있음.
- 서울가족플라자(현행 스페이스 살림)에는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장 난감도서관,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서울엄마아 빠VIP존,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이 입주하여 있는데, 우먼테크 교육라운지나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의 사무는 일·생활 균형과는 일부 다른 목적을 가진 사무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에 따라 업무효율과 이용시민 편의를 위해 기능과 역할에 따른 사무공간의 재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구체적 사업규정과 관련: 여성가족플라자(안 제5조 관련)

○ 현행 조례의 체계 상 개정안 제4조제1호에 따라 동 개정안 제5조 도 개정되어야 하는 바, 이에 따라 개정안 제5조는 여성플라자의

^{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재단의 사업)

^{6.} 국내외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 분야 기관과의 연계ㆍ교류 및 민간 협력

명칭 및 기능을 재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 제5조에서 여성플라자의 기능은 안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한 대로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지원(안 제5조제6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안 제5조제7호)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교류활성화와 공간지원 업무는 축소하여 제시하고 있음(안 제5조제2호).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기능 | 제5조(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기능 |
| 등) ① (생 략) |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여성플라자의 주요기능은 다 | ② |
| 음 각 호와 같다.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 | 2 |
| 교육 <u>공간 지원</u> | <u>지원</u>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u> <신 설></u> | 6.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
| | <u>을 위한 지원</u> |
| <u><신 설></u> | 7.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 <u>6</u> . (생 략) | <u>8</u> . (현행 제6호와 같음) |

- □ 구체적 사업규정과 관련: 서울가족플라자(현행 스페이스 살림) (안 제5조의2 관련)
 - ㅇ 개정안에서 서울가족플라자(현행 스페이스 살림)의 경우 명칭과

기능 모두 변경되며 변경의 폭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데, 이 는 그간의 서울가족플라자와 여성플라자의 기능 및 공간변화를 반 영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담고 있다고 볼수 있음.

혅 했

제5조의2(스페이스 살림의 기능) 제5조의2(서울가족플라자의 기능)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스페이 스 살림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창업공간, 자금, 장비 등 여성 창업자 육성에 필요한 지원
- 2. 여성 창업자 판로 개척 및 투 자 유치 지원
- 3.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
- 4. 가족 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
- 5. 정보통신분야 성별격차 해소 를 위한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 6. 그 밖에 여성창업 활성화. 성 평등・돌봄 환경 조성 및 여 성 ·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개 정 아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서울가 족플라자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양육자의 <u>돌봄 지원을 위한</u> 양육친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 제공
- 2. 양육자와 아동을 위한 편의 휴식 • 놀이 • 돌봄 전용 공간 제공
- 3. 영유아발달 지원 및 보편적 놀이 기회 제공
- 4. 여성ㆍ청년의 경력진입 및 경력개발 지원
- 5.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 및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 6. 그 밖에 양육자의 돌봄 및 일 ·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u>업 추진</u>

- 과거 스페이스 살림이 여성의 창업에 대한 지원, 정보통신분야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성별 격차가 나타나는 분야에 대한 지원에 중 점을 두었다면 개정안은 양육 또는 가족 친화적 시설로 그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
- 특히, 스타트업 등 여성창업기업 지원 기능과 공간을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서울시 경제정책실로 이관하고 양육 돌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기능과 공간을 강화 및 확대하고있음.

<스페이스살림 창업지원 기능 및 공간 이관 계획(2022.9.)2)>



ㅇ 이러한 방향전환 및 운영결과, 공간적으로는 거점형 키움센터, 서

²⁾ 양성평등담당관-1326(2022.9.26.), 스페이스살림 창업지원 기능 및 공간 기관 계획,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울아이발달지원센터,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엄마 아빠 VIP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 장난감 도서관과 식당 및 커피전문점이 입주해 있어 대부분 일시적 이용시설에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 향후 서울가족플라자는 일시적 돌봄기능 제공에서 더 나아가 여성 취업특화시설로서 유관기관 집적을 통한 일·돌봄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여성플라자의 경우 성매매 피해 회복 등 여성복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이 다수 입주해 있고 이를 통해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복지시설, 서비스 간 집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이용료 부과 (안 제18조 및 제19조 관련)

○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³⁾,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

^{3) 「}지방자치법」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수할 수 있고, 이처럼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 스페이스 살림을 서울가족플라자로 그 명칭을 바꾸고, 이용료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재규정하려는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이용료의 부과·징수) ① | 제18조(이용료의 부과·징수) ① |
|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 | |
| 정 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 |
|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 |
| 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 |
| 이용료 등을 부과 · 징수하여야 | |
| 한다. | <u>.</u>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의2. 스페이스 살림: 별표 6의2 | 1의2. <u>서울가족플라자 :</u> |
|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 | |
| 핵 |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동 개정안은 서울가족플라자(현행 스페이스 살림)의 창업기능을 제외하고, [별표6의2]를 개정하여 창업공간의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 이는 개정안의 목적이 해당 시설의 현재 기능에 맞춰 창업 및 연수 기능을 제외하고, 양육자 중심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안이기 때문에 동 개정안 내에서 이용료 부과기준에 대한 개정을 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별표6의2] 스페이스 살림 이용료 부과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구 분 | | 이용료 부과.징수 기준(단위) | | |
|-------------|------|------------------------|-----------------------|--|
| 一 | ਦ | 현행 | 개정안 | |
| 창업공간 이용료 | 창업공간 | 2,280원~20,000원(㎡당/1개월) | (삭제) | |
| | 공유좌석 | 10,000원~50,000원(1개월) | 10,000원~50,000원(1개월) | |
| 기본시설 | 공유부엌 | 7,500원~30,000원(1시간) | 7,500원~30,000원(1시간) | |
| 이용료 | 다목적홀 | 52,800원~160,000원(1시간) | 52,800원~160,000원(1시간) | |
| | 교육장 | 25,000원~65,000원(1시간) | 25,000원~65,000원(1시간) | |
| 연수시설 이용료 | | 40,000원~230,000원(1박) | (삭제) | |

○ 또한 동 개정안은 이용료 감면규정에서 연수시설 이용료 감면사항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과거 스페이스 살림 내 연수시설로 이용되던 f존이 현재 창업시설로서 경제정책실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생 | 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현 |
| 략) | 행과 같음) |

- ②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의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스페이스 살림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 일 수 있다. 다만, 창업공간은 제외하다.
- 1.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치구는 제외한다): 기본시 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 분의 50을 줄인다. 다만, 연수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 0분의 20을 줄인다.
- 2.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 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 시설을 이용 하는 경우: 기본시설 및 부속 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다만, 연수시설의 경 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 을 줄인다.
- 3.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 <u><삭 제></u> 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

| ② |
|--------------------------------|
| |
| <u>서울가족</u> |
| <u> 플라자</u> |
| <u>.</u> |
| · 1. <u>양육자의 일·돌봄 지원을</u> - |
| |
| |
| |
| <u><단서 삭</u> |
| <u>제></u> |
| 2 |
| |
| |
| |
| |
| <u><단서 삭제></u> |
| |
| |

<u>간단체가 연수시설을 이용하</u> 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20 을 줄인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부칙을 통한 타조례 개정(안 부칙 제2조)

○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9호에 스페이스 살림 관리·운영 주체인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으로 규정된 "스페이스 살림 운영 및 관리"를 "서울가족플라자 운영 및 관리"로 변경하였음. 이는 변경된 시설명을 반영하여 서울가족플라자에 대한 여성가족재단의 책임과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제3조(재단의 사업) |
| | |
| | |
| 1. ~ 8.(생 략) | 1. ~ 8.(현행과 같음) |
| 9. <u>스페이스 살림</u> 의 운영 및 관 | <u>9. 서울가족플라자</u> |
| 리 | |
| 10. ~ 12. (생 략) | 10. ~ 12.(현행과 같음) |

□ 집행기관 의견

○ 집행기관은 개정안에 대해 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의 주요기 능이 시설 초기에서 변화됨에 따라 그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이견이 없다고 하였음.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여성창업지원기관으로서의 스페이스 살림에서 돌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중심으로의 기능 및 공간변화를 반영하고자 스페이스 살림의 명칭과 스페이스 살림 및 여성플라자의 기능을 재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명칭 및 기능조정에 따른 이용료 부과 규정도 일관되게 개정하는 것도 타당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 가결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기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601 발 의 년 월 일:2024년 02월 05일 발 의 자:최기찬, 김기덕, 김인제,

박승진, 박칠성, 서준오, 아이수루, 왕정순, 유정희 , 이영실, 이원형, 임만균, 정준호, 최재란, 한 신 의원(15명)

1. 제안이유

-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의 주요기능이 시설 설립초기에는 각각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상호 교류 활성화 등의 역할과 여성의 창업지원이라는 역할에서 최근에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과 양육자의 돌봄 및 일 생활 균형 지원이라는 역할로 크게 변화되어 조례에도 현실에 맞게 기능과 용어를 수정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 '스페이스살림'이라는 명칭에는 여성창업가를 '살리'는 창업지원시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 변화된 시설의 성격에 맞게 양육자와 아이를 위한 양육친화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 '서울가족플라자'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여성플라자'의 정의와 기능을 변경하여 규정함
- 나. '스페이스 살림'의 정의와 기능을 변경하여 규정함
- 다. 조례에서 기존 사용하던 명칭인 '스페이스 살림'을 '서울가족플라자' 로 변경함

라. 용어 통일을 위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던 '스페이스 살림'을 '서울가족플라자'로 변경하는 부칙 신설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상호 교류 활성화, 이에 부수하는 공간지원"을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서울가족플라자 : 양육자의 돌봄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5조제2항제2호 중 "공간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지원
- 7.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서울가족플라자의 기능)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서울가족플라자의 주 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양육자의 돌봄 지원을 위한 양육친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 제공
- 2. 양육자와 아동을 위한 편의 휴식ㆍ놀이ㆍ돌봄 전용 공간 제공
- 3. 영유아발달 지원 및 보편적 놀이 기회 제공

- 4. 여성·청년의 경력진입 및 경력개발 지원
- 5.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 및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 6. 그 밖에 양육자의 돌봄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추진

제18조제1항제1호의2 중 "스페이스 살림:"을 "서울가족플라자:"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스페이스 살림"을 "서울가족플라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여성창업 활성화를"을 "양육자의 일·돌봄 지원을"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

서울가족플라자 이용료 부과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구 분 | | 이용료 부과 · 징수 기준(단위) |
|------|------|-----------------------|
| | 다목적홀 | 52,800원~160,000원(1시간) |
| 기본시설 | 교육장 | 25,000원~65,000원(1시간) |
| 이용료 | 공유좌석 | 10,000원~50,000원(1개월) |
| | 공유부엌 | 7,500원~30,000원(1시간) |

※ 그 밖의 부대시설 이용료 및 관리비는 원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청구 가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제8조제1항 중 '스페이스 살림'을 '서울가족플라자'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
|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 · 운영 | |
| 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 |
| 호와 같이 구분한다. | , |
| 1. 여성플라자 : 여성의 직업능 | 1 <u>양성평등 문화</u> |
| 력 개발, 상호 교류 활성화, 이 | 조성 및 확산, 폭력 예방 및 |
| 에 부수하는 공간 지원 등 여 | 피해지원, 여성의 직업 능력 |
| 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 개발 |
|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 1의2. 스페이스 살림: 여성창업 | 1의2. 서울가족플라자 : 양육자 |
| 활성화, 성평등·돌봄 환경 조 | 의 돌봄 및 일·생활 균형 지 |
| 성 및 여성ㆍ가족 역량 강화 | 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 2. ~ 7. (생 략) | 2. ~ 7. (현행과 같음) |
| 제5조(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기능 | 제5조(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기능 |
| 등) ① (생 략) |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여성플라자의 주요기능은 다 | ② |
| 음 각 호와 같다.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 | 2 |
| 교육 공간 지원 | <u>지원</u>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신 설> | 6.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
| | 을 위한 지원 |
| <u><신 설></u> | 7.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 6. (생략)
- 제5조의2(스페이스 살림의 기능) 제5조의2(서울가족플라자의 기능)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스페이 스 살림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창업공간, 자금, 장비 등 여성 창업자 육성에 필요한 지원
 - 2. 여성 창업자 판로 개척 및 투 자 유치 지원
 - 3. 일 · 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
 - 4. 가족 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
 - 5. 정보통신분야 성별격차 해소 를 위한 교육 및 창작활동 지 원
 - 6. 그 밖에 여성창업 활성화, 성 평등・돌봄 환경 조성 및 여 성 ·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 제18조(이용료의 부과・징수) ① 저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 정 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 · 징수하여야

- 8. (현행 제6호와 같음)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서울가 족플라자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양육자의 돌봄 지원을 위한 양육친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 제공
 - 2. 양육자와 아동을 위한 편의 휴식·놀이·돌봄 전용 공간 제공
- 3. 영유아발달 지원 및 보편적 놀이 기회 제공
 - 4. 여성·청년의 경력진입 및 경력개발 지원
- 5.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 및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 6. 그 밖에 양육자의 돌봄 및 일 · 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 추진

| 제18조(이용료의 | 부과·징수) ① |
|-----------|----------|
| | |
| | |
| | |
| | |
| | |

한다.

- 1. (생략)
- 1의2. <u>스페이스 살림:</u> 별표 6의2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 액
- 2. ~ 5. (생략)
- ② (생략)
- 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생략)
 - ②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의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스페이스 살림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 일 수 있다. 다만, 창업공간은 제외한다.
 - 1.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치구는 제외한다): 기본시 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 분의 50을 줄인다. 다만, 연수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 0분의 20을 줄인다.
 - 2.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 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 1. (현행과 같음) |
|----------------------|
| 1의2. 서울가족플라자 : |
| |
| |
| 2. ~ 5. (현행과 같음) |
| ② (현행과 같음) |
| 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현 |
| 행과 같음) |
| 2 |
| |
| 서울가족 |
| 플라자 |
| |
| , |
| 1. 양육자의 일ㆍ돌봄 지원을 - |
| |
| |
| |
| <u><단서 삭</u> |
| 제> |
| |
| 2 |
| |
| |
| |
| |
| |

줄인다. 다만, 연수시설의 경 ----. <단서 삭제> 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 을 줄인다.

- 3.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 <삭 제> 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 간단체가 연수시설을 이용하 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20 을 줄인다.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명을 스페이스 살림에 서 서울가족플라자로 변경한 안으로 관련부서(양성평등담당관) 확인결과 기추진 사업(붙임1, 붙임2 참고)이므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본 안 제5조(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기능 등), 제5조의2(서울가족플라자 살림의 기능)를 변경·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기추진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계분석관 손제승

2 02-2180-7954

e-mail: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활성화

기획조정본부 │ 본부장: 이은회☎810-5061 공간운영실장: 김상기☎5270 운영팀장:전진우☎5261 담당: 서한솔☎5264

여성가족정책 실행기관 및 유관단체 집적을 통한 정책 추진력 강화 기반 조성 및 공간 인프라 개선을 통한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공으로 공간 활성화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3년 1월~12월

ㅇ 사업대상 : 서울여성플라자 내 입주기관 근무자 및 시민 이용자

- ㅇ 주요내용
 - 여성·아동·가족·보육 관련 민간단체 모집 및 NGO센터 운영
 - 입주기관·단체 사무공간 지원 및 편의공간 개선
 - 서울여성플라자, 스페이스 살림 대관운영체계 통합으로 이용자 편의성 증진
 - 서울여성플라자 노후 운영시설 기능보강 및 안전 인프라 강화

□ 추진실적

- o 입주 기관 및 민간 단체 사무공간 지원 및 편의 공간 개선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및 여성가족정책 실행기관(6개) 입주공간 운영
 - NGO센터 입주공간 운영 및 신규 입주지원(총 9개 단체 입주 중)
 - '취업이음' 프로젝트 대행사업 추진 사무공간 조성(2023년 신규 입주기관)
 - 스포츠센터 신규 운영사 선정 및 2~3층 도서관·라운지 용도전환(설계 진행 중)
 - 전화응대 시스템 개선 등 이용자 중심의 대관공간 운영 활성화
- ㅇ 서울여성플라자 노후 운영시설 보강 및 안전 인프라 강화
 - 서울여성플라자 안전점검 및 상반기 법정검사 이행(도시가스, 소방시설 작동가능점점)
 - 노후 설비(냉온수기 및 냉각탑 완료) 교체 공사 등

○ 향후계획

- o 여성·아동·가족·보육 유관 단체 추가 모집 및 입주 지원 : '23. 8~9월
- o 시민이용공간(스포츠센터) 노후설비 기능보강 공사 및 재개관: '23, 8~9월
- 2, 3층(휴라운지, 성평등도서관) 공간 개선 공사: '23, 9~12월
- o 안전강화 프로그램 운영(재난대응합동훈련, 위험성평가실시 등): '23, 8~12월
- 소요여산 : 2,441,645천원(집행실적 : 1,729,835천원/집행률 : 70.9%)

2 스페이스 살림 운영 활성화

기획조정본부 | 본부장: 이은회☎810-5061 공간운영실장: 김상기☎5270 운영팀장:전진우☎5261 담당: 김원경☎5252

양육자의 일·돌봄 지원 및 양육자 존중문화 확산 사업의 거점 공간 조성과 운영 활성화를 통한 양육친화도시 실현에 기여

□ 사업개요

- 시업기간: 2023년 1월~12월
- ㅇ 사업대상 : 스페이스 실림 입주기관 및 양육자, 어린이, 기족 등 시민 이용자
- ㅇ 주요내용
 - 양육자의 일·돌봄 지원 공간 조성 및 관리(우먼테크교육플랫폼, 아동동반공유사무실)
 - 시 역점사업 '서울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추진 공간 조성 및 운영 지 원(서울시립 키즈카페,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거점2호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 가족 페스타, 옥상텃밭 등 가족 단위 문화여가 생활 프로그램 실행
 - 신규 입주기관 및 대시민 서비스 내용을 반영한 공간 BI 변경 홍보

̄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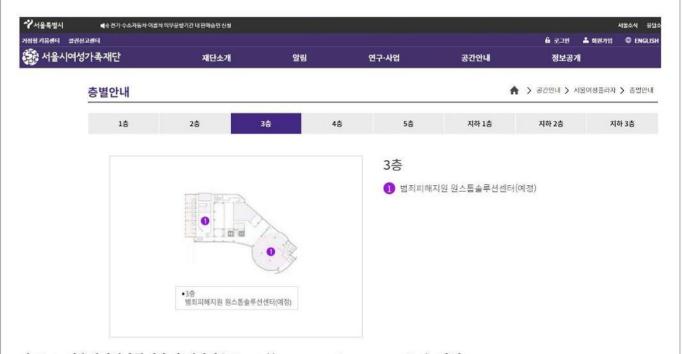
- ㅇ 공간 신규 조성 및 입주 지원
 - 우먼테크교육 플랫폼 교육장 조성 완료('23, 3.) 및 운영
 -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거점2호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입주
 - 대관공간(교육장 1, 2) 조성 완료('23. 3.) 및 운영(7월 기준 대관수입 예산 105% 달성)
- ㅇ 가족 단위 문화여가 생활 프로그램 실행
 - 스페이스 살림 상반기 가족 페스타 운영(프로그램 참여자 수 : 1.546명)
 - 옥상텃밭 24개소 시민 분양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 텃밭 이용 관리 등
- o 스페이스 살림 공간 BI 변경을 위한 자문 및 컨설팅 진행
 - 공간 기획사 전문가 자문 완료, 통합 브랜드 명칭 및 디자인 개발 중

□ 향후계획

- o 장난감도서관 등 아이돌봄·가족지원서비스 시설 입주 추진 : '23. 8~12월
- o 공간 브랜드 컨설팅 및 BI 변경 : '23, 8~10월
- o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반기 스페이스 실림 기족 페스타): '23. 8~10월

자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췌

[붙임2] 서울여성플라자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자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https://www.seoulwomen.or.kr/) 발췌